|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협약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와 □□□□□(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제1조(목적)** 본 협약은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사업에 관한 운영기관과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의 역할)** ① 운영기관은 관련 법령 및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 한다.   1. 협약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분석,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수요조사,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등 직업능력개발 지원    2. 협약기업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한 채용예정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개발․운영 등 지원    3. 그 밖에 협약기업의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약기업은 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며,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에 적극 노력한다. **제3조(훈련과정운영비에 관한 약정)** ① 운영기관은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훈련과정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약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1. 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만으로는 교육훈련실시가 어려운 경우  2. 훈련생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교육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훈련과정운영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  ② 운영기관은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0조에 따라 협약기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라 협약기업에 훈련과정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 협약기업은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운영비를 운영기관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제4조(협약서의 체결)** ① 운영기관과 협약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협약서가 체결된 것으로 본다.  1. 운영기관과 협약기업이 명시적으로 본 협약서를 체결한 경우  2. 협약기업이 운영기관에서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근로자(채용예정자를 포함한다.)를 참여시킨 경우. 이 때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협약서의 체결시점은 운영기관이 해당 근로자가 참여하는 훈련과정의 실시신고를 공단에 하고 이를 공단이 수리한 날로 본다.  ② 운영기관이 규정 및 규칙에 따라 정한 전산시스템에 운영기관이 관련 사항을 등록한 것으로 제1항에 따른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본다.**제5조(성실의무)** 운영기관과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종료이전에도 협약기업이 2년간 연속하여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201  년   월   일

|  |  |
| --- | --- |
| **(운영기관)** | **(참여기관)** |
| C:\Users\user\AppData\Local\Temp\Hnc\BinData\EMB00001838372b.gif대한상공회의소 | □□□□□ |
| **주  소 :**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 **주  소 :** |  |
| **대표자(총장) :** | **박 용 만    (인)**  | **대표자 :**  | **(인)**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 일반 현황 1부 |

 【 첨부 】

|  |
| --- |
|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 일반 현황 |
| 회사명 |   | 대표자명 |   |
| 주소(본사) | 우편번호(     -     ) |
| 업  태 |   | 업 종 |   | 상시근로자수 |             |
| 담당자 | 성  명 |  | 부서명 |   |
| 직 위(필수) |  |
| 전화번호 |  사무실:  휴대폰(\*필수): | FAX |   |
| 전자우편 주소 |   | 홈페이지 주소 |   |
| 고용보험관리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기타 사항 】- 기업 구분(대기업/중소기업) :\* 2016년부터 참여기업(협약기업) 교육훈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훈련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른 협약기업의 교육훈련 담당자 연락처 정보를 요청합니다.(위의 담당자 정보는 협약기업 관리 및 훈련만족도 설문조사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